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H(주식-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H(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H(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3년 12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3년 12월 24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차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간이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Schroder ISF US Small & Mid-Cap Equity'는 주로 미국에 상장된 중소형 주식에의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자본증식 및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ISF US Small & Mid-Cap Equity'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며, 일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위한 목적이나, 환헤지를 목적으로 현금자산을 일부 보유 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ISF US Small & Mid-Cap Equity'는 미국내 상장된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미국 중소형주란 매입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하위 40%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2) 세부 운용전략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미국내 상장된 중소형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신탁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100% 수준까지 헤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해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지수: Russell 2500 TR Index (USD) 90% + Call 금리 10%

※상기 참조지수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한 단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재산내 유동성 및 환헤지에 의한 성과 등의 요소는 참조지수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조지수 산출시 종가, 환율등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주요 운용 가이드 라인 >

기준	가이드라인 및 내용	
종목수	70 ~ 90 종목	
종목당 투자 비율	0.5% ~ 5%	
업종별 투자 비중	벤치마크 대비 ± 10%	
저평가 종목 (Mispriced Growth)	50 ~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 ▪ 견실한 재무제표 및 개선되는 현금 흐름을 보이는 기업 ▪ 매출성장을, 마진증가율 또는 투자자본이익률 성장 ▪ 대비 낮은 주가를 보이는 기업
안정수익 종목 (Steady Eddie)	20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이익 및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 ▪ 견실한 재무제표, 풍부한 현금흐름을 보이는 기업
턴어라운드 종목 (Turnaround)	0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 ▪ 법적, 정치적, 산업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유동성 자산	5 ~ 10%	

< 운용프로세스 >



(3) 위험 관리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Portfolio Risk and Investment Strategy Manager("PRISM") 등)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 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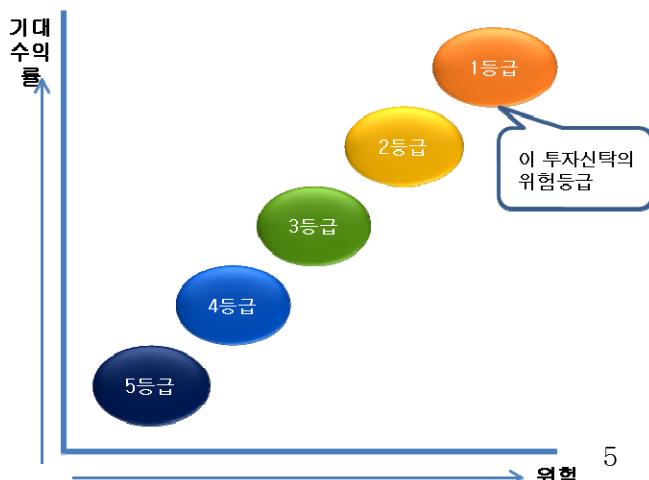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를 등 기타 국제적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예정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주요 투자대상이 국외주식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지역적인 문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한 주식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 개별 기업의 고유 위험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원금 내외에 대해서는 장내·외 선물환 거래를 통해 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 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 해지 비율을 조정하여 최대한 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선물환 거래상대방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통화관련 환위험 회피 도구가 유효하지 못하여 적절한 환위험 회피가 곤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위험회피 및 투자 목적으로 옵션, 선물 및 선도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옵션을 매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펀드가 수령하는 프리미엄은 고정되어 있지만, 펀드는 그 금액을 초과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매수인이 옵션을 행사하는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 경우 펀드는 현금으로 옵션을 결제하거나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펀드 내 환헤지를 위하여 일부 선물환 등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더 높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됩니다.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상된 지급금 또는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실현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일국가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단일 국가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 투자국 고유의 국가위험(country risk)에 노출됩니다. 단일국가 투자위험은 해당 국가의 정치, 환율, 경제 등의 상황, 국가부도위험, 자본이전의 편리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나라에 분산투자할 경우에 단일국가 투자위험이 감소하지만, 주로 한 나라에 집중투자할 경우에 단일국가 투자위험이 극대화됩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보다 더 큰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소형주는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할 수 있으며 단기적 변동성의 급격한 확대 및 실제 거래되는 매도/매수 호가간의 차이 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제도 (FATCA)하의 미국 세금 원천징수	이 투자신탁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미국에서 얻은 소득 및 이 투자신탁에게 이자·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매각 수익 각각의 3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세청 또는 재무부는 아직 협정 양식(Form)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위 규정의 운영은 현저히 확대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 및 제공·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및 정보 보고·공개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의 중소형주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과 환위험 노출 등에 있어서 더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 등으로 표시된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2013.11.30 현재)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장정주	1978	책임 운용역	20	2조 9,696억원	- 기업은행 자금운용실, 동양선물 - 슈로더투신(2005.7 ~) - 운용경력 6년 - 서강대 경영학 학사, CFA
김영신	1971	부책임 운용역	15	6,825억원	-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트레이딩 - 씨티그룹증권 트레이딩 - 슈로더투신(2005.6 ~) - 운용경력 6년 - 연세대 영문학 석사

[상기 운용현황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책임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있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운용자산 규모에서 당해 집합투자기구 수치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모자형 구조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 산정시 당해 모집합투자기구에 속한 자집합투자기구들은 제외되며, 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 산정시에는 자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가 제외됩니다. 단, 투자신탁 최초 설정시에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수치가 기재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투자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개수 및 규모: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및 이력
Jenny Jones	미국 소형주/ 중 소형주 주식팀 총괄 본부장 (Head of US Small and SMID Cap Equity)	- 1983년 Mutual of America Life Insurance Co.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역임 - 1990년 Oppenheimer Capital, L.P.에서 Small Cap Value부서장 역임 - 1996년 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입사 후 이사 역임 - 2002년 슈로더(북미법인) 미국 소형주 주식팀 헤드로 입사 - 2004년 미국 중소형주 펀드 최초 설정 이후 현재까지 책임 매니저 - 현재 미국 소형, 중소형주식팀 총괄본부장 - 미국 예일대 학사학위 취득. 뉴욕대 MBA취득.

6. 투자실적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

연도	최근 1년차 12.12.01 ~13.11.30	최근 2년차 11.12.01 ~12.11.30	최근 3년차 10.12.01 ~11.11.30	최근 4년차 09.12.01 ~10.11.30	최근 5년차 09.10.06 ~09.11.30
펀드	33.02	13.20	-0.89	16.08	
참조지수	34.37	18.25	-0.44	22.70	

주1) 참조지수: Russell 2500 TR Index (USD) 90% + Call 금리 10%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은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II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C	제한없음	없음	
C2	종류 C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없음	
C3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없음	
C4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없음	
C-e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없음	
I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고객	없음	
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 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부과비율 (연간, %)								부과 시기
	A	C	C2	C3	C4	C-e	I	F	
집합투자업자보수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금
판매회사보수	0.7000	1.5000	1.3500	1.2150	1.0935	1.0900	0.3000	0.0500	
신탁업자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548	0.0561	0.0454	0.0598	0.0150	0.0534	0.0000	0.0000	사유발생시
총보수 · 비용	0.9148	1.7161	1.5554	1.4348	1.2685	1.3034	0.4600	0.2100	-
합성 총보수 ·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 비용 포함)	1.7845	2.5857	2.4250	2.3045	2.1702	2.1731	0.4600	0.2100	-
증권 거래비용	0.0018	0.0019	0.0016	0.0018	0.0006	0.0018	0.0000	0.0000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2.10.06 ~ 2013.10.05]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2.10.06 ~ 2013.10.05]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부담)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부과하는 운용보수는 1.0%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투자기간	집합투자기구 종류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	193	388	599	1,208
	C	176	545	938	2,039
	C2	159	495	853	1,862
	C3	147	457	789	1,728
	C-e	130	405	700	1,539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 C2, C3, C4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연간 1.0%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boxed{\text{외국납부세액}} \times \boxed{*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 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의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의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의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판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 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투자신탁 간 판매보수 및 수수료·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http://www.schroders.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 협회(http://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판매회사 영업시간에만 가능.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주2) 환매의 경우,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III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4 기(2012.10.06 – 2013.10.0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3 기(2011.10.06 – 2012.10.0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2 기(2010.10.06 – 2011.10.0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13.10.05)	(2012.10.05)	(2011.10.05)
운용자산	3,062,437,185	2,175,715,773	3,452,713,443
증권	2,950,840,043	2,154,827,200	3,055,780,41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1,597,142	20,888,573	396,933,02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8,694,145	42,179,773	66,243,522
자산총계	3,141,131,330	2,217,895,546	3,518,956,96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1,525,097	56,354,114	334,792,330
부채총계	31,525,097	56,354,114	334,792,330
원본	2,453,759,568	1,842,301,301	3,490,090,359
수익조정금	79,247,496	-422,988,904	388,187,541
이익잉여금	576,599,169	742,229,035	-694,113,265
자본총계	3,109,606,233	2,161,541,432	3,184,164,635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12.10.06 – 2013.10.05)	(2011.10.06 – 2012.10.05)	(2010.10.06 – 2011.10.05)
운용수익	576,605,827	904,143,445	-692,525,562
이자수익	5,091,076	6,242,501	4,552,56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571,514,751	897,900,944	-697,078,122
기타수익	1,278,548	339,77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285,206	766,321	1,587,703
당기순이익	576,599,169	903,716,894	-694,113,265
매매회전율	0.00	0.00	0.00